

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.

-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,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,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 -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 -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이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됨에 따라, 수영장 관리·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영장 관리·운영 주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
 - 주요 내용으로는,
 - 현행 충청북도 학생회관 소재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, 수영장이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하였습니다(안 제17조제2항).

○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“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”은,
 - 제85회 전국체전을 위해 실내화한 청주농고 수영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리주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 다만, 향후 종합적인 관리·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○ 먼저,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
-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하여, 관리·운영 주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함에 따라, 충청북도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에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○ 주요 내용으로는,

- 충청북도 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 중 부속설비 징수액 다음에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, 자세한 내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“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
조례안”은
 - 제85회 전국체전준비를 위해 실내수영장으로 정비한 청주농고 수영장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주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하고,
 - 주민들에게 시설을 유료 개방하여 도민 체육활동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, 수영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그러나,
 - 수영장 사용료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,
 - 별표 2의 수영장 사용료 비교란에
 - ① 징수액이 1인 기준 금액임을 명시하고,
 - ② “13세 이상 19세 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자”로 되어 있는 중·고등학생을 “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”로 하여, 사용료 및 적용대상의 의미를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 -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,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,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,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,

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50%를 감면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며,

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법 제정 취지로 볼 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일반인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,

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충청북도 학생회관 소관 수영장과 제천 학생회관 소관 롤러스케이팅장 및 수영장에 대해서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에게는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요금은 타 시설 할인사례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향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이상으로 “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” 및 “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”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